

이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소관부서 :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제정 1996 · 3 · 1 조례 제 122호
전문개정 2000 · 7 · 28 조례 제 346호
개정 2003 · 2 · 17 조례 제 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9 · 3 · 10 조례 제 752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7 · 3 · 7 조례 제1298호
(이천시청,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 9 · 28 조례 제1424호
(이천시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 3 ·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9 · 3 · 10>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 3 · 10>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 · 3 · 10>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9 · 3 · 10>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09·3·10>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이천시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9·3·10>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 관리 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한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

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에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비용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수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0>

②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0]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은 당해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0>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② 협의회는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09·3·10>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개정 2009·3·10>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소규모수도시설의 소독설비 유지관리와 소독시행 <신설 2009·3·10>
6.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9·3·10>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협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 규정에 따른 취수원 보호
2. 제6조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의 의뢰
3. 제8조 규정에 따른 개선조치
4. 제12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5. 제21조 규정에 따른 교육

[본조신설 2009·3·10]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7·28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17조례 제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3·10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7 조례 제1298호, 이천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알림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8·9·28 조례 제1424호,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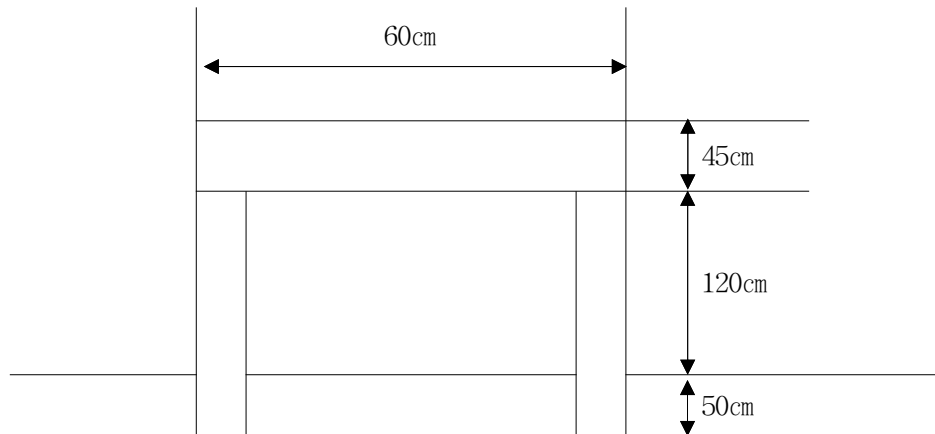
별표 알림 중“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별표] 〈개정 2018·9·28〉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 바탕색 : 흰 색
- 글 씨 : 청 색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 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 3. 10>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
(제4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이천시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협의회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 -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타	
		최초사업비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1					심도 : m			
			집수정2					심도 :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		2차 :		3차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개)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수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3.10〉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이천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조사 및 확인항목		검사일		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월	일	특기사항	조치결과
시 설 의 청 소	소 독 기				
	취 수 원				
	배 수 지				
	침 전 지				
	여 과 지				
	관로파손				
오 염 원 제 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담 당 자		직 :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9. 3. 10〉

소규모 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이천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점 검 자	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				